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하구종합복지회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12-278번지에 둔다.
2. 다대사회복지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다대동 113-12번지에 둔다.

제 3 조(이용 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 4 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한 자
5.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5 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6 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 7 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복지관시설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1. 탁 아 소	1인 1월 (종일반)	50,000원 이하 (중식, 간식제공)	
2. 독 서 실	1인 1회 1인 1월	500원 이하 10,000원 이하	
3. 취미교실 운영	1인 1월 (과목당)	13,000원 이하	
4. 기능교실 (직업훈련)	1인 1월	25,000원 이하	
6. 강당대여	1회	20,000원 이하	2시간 기준
7. 기타시설			보조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소 재 지	
건 물 구 조	
규 모	부지 m', 건물 m'
용 도	

위의 사회복지관을 운영코자 수탁 신청합니다.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법인 자부담 출연액 및 출연 각서 1부

19 . . .

신청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귀하